

콘텐츠진흥원 경북웹툰캠퍼스 운영 및 관리지침

제정 2023.05.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함)이 운영하는 경북웹툰캠퍼스(이하 “캠퍼스”라 함)의 시설 이용 및 장비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경북 경주시 침성로 97에 소재하고 진흥원이 관장하는 시설물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캠퍼스 시설의 관리·운영·이용자에게 적용한다.
③ 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입주”라 함은 본 지침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창작 또는 사업을 위하여 진흥원이 관장하는 공간시설을 점용하는 것을 말한다.
- 2.“입주자”라 함은 입주 승인 절차를 거쳐 입주 계약을 맺고 창작 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작자 또는 기업을 말한다.
- 3.“입주시설”이라 함은 입주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진흥원 및 캠퍼스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진흥원이 관장하는 모든 공간시설을 통칭한다.
- 4.“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입주 기간 만료 또는 당초 계획한 창작 및 사업을 입주 기간 내에 완료하여 진흥원에서 관장하는 공간시설을 점용하지 아니하고 자립하는 것을 말한다.
- 5.“퇴거”라 함은 입주 계약사항 위반 또는 입주 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자의 사정 등에 의하여 입주 계약을 해지함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범위) 진흥원은 캠퍼스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자 선정, 지원, 졸업, 퇴거 등 관리
2. 캠퍼스 시설 및 장비 운영
3. 웹툰·만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5조(운영공간 및 운영시간) ① 캠퍼스 시설의 운영공간과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교육실 및 전시홀, 사무공간 : 월-금 9시~18시(법정공휴일, 12시~13시 제외)
2. (2층) 입주 및 휴게시설 : 24시간 연중무휴

② 캠퍼스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점검, 공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웹툰캠퍼스 입주실 현황

구분	호실	전용면적(㎡)	개수	입주인원
개인 창작실	201호실	16.8㎡	1개	1명
	202호실	12.3㎡	1개	1명
	203호실	12.3㎡	1개	1명
	204호실	12.3㎡	1개	1명
	205호실	12.3㎡	1개	1명
	206호실	12.3㎡	1개	1명
	207호실	12.3㎡	1개	1명
	208호실	12.3㎡	1개	1명
	209호실	12.3㎡	1개	1명
	210호실	12.3㎡	1개	1명
공동 창작실	211호실	48.2㎡	1개	5명
기업 입주실	1호실	22.5㎡	1개	2명
	2호실	27.2㎡	1개	2명
합계	13개실	225.4㎡	13개실	19명

제2장 입주자 모집 및 관리

제6조(입주대상 및 자격) ① 입주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작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자 또는 경상북도 소재 학교에 재·휴학, 졸업한 자로 웹툰·만화 콘텐츠 창작을 통해 관련 산업에서 활동을 하려는 자
2. 기업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7항에 의한 만화사업자이거나 만화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단,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자격을 득할 시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실을 사업장 소재지 또는 지사로 등록하여야 함
3. 기타 웹툰·만화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입주 승인 및 입주계약 체결 이후라도 진흥원은 해당자의 입주 승인을 취소하고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 제한된 개인 및 사업자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부도 상태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5.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입주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단,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행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자는 예외로 함

제7조(입주자 모집) ① 입주자 모집은 입주 시설의 공실 현황 및 기타 내부 사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입주 모집 공고는 입주실 별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60일 이내에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단, 결원 시에는 수시로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③ 입주 공고 방법은 진흥원의 홈페이지 및 캠퍼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이외의 공고 매체는 진흥원이 정한다.

제8조(입주신청) 입주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공고한 기간 내에 제9조에 정한 관련 자료를 지정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입주신청 서류) ① 입주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신청서 1부
2. 창작 또는 활동 기획서 1부
3. 주요 활동 실적 1부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입주자 이력서 1부
6. 수상 및 경력 증빙자료 등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② 입주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실적 확인 증빙자료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6.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7.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제10조(입주자 선정) 제6조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 선정은 서류평가, 면접평가로 나누어 진행
2. 서류평가는 접수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하며, 면접평가는 입주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3. 면접평가 대상자는 공고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야함
4.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입주 승인 및 입주실 선정 진행

제11조(예비 입주자 선정) 진흥원은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 지연 및 포기, 기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순위를 부여하여 그 순위에 따라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체결) ① 진흥원은 제10조에 의하여 선정된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승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승인을 받은 입주예정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일까지 지정된 서식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일을 설정하고 입주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기간 및 연장) ① 입주기간은 입주계약서에 명기된 입주일로부터 기본 2년으로 하며, 심사평가를 통해 1차 연장 1년, 2차 연장 1년으로 총 4년을 입주할 수 있다. 단, 공실 현황 및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 입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기간 연장을 원하는 자는 지정된 서식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수행계획 달성도와 실적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④ 진흥원은 입주기간 연장 신청이 있더라도 캠퍼스의 사업 종료, 사업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입주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입주 부담금) ① 진흥원은 캠퍼스의 효율적인 입주시설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입주 부담금의 종류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관리비
③ 입주 부담금은 입주자가 개인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흥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따른다.
④ 입주 부담금은 1개월 단위로 부과하며, 1개월 미만 사용 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⑤ 입주자는 각종 입주 부담금을 지정한 기한 내에 진흥원의 지정 계좌로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흥원은 납부 독촉 및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4회 이상 미납 시 진흥원은 입주자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입주 승인 취소) 진흥원은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
2. 선정 후 지정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퇴거) ① 진흥원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지정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승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제6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입주자가 개인적 이유 등으로 자진해서 퇴거를 원할 경우
5. 월 15일 이상 필수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가 4회 이상일 경우
6. 입주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상북도 및 진흥원의 명예 및 금전적 손해를 입힐 경우
7.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입주자의 행위로 인하여 입주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입주자를 퇴거시킬 경우 진흥원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4호에 의거 입주자가 자진하여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자는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지정된 서식에 의한 서면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해야하며 퇴거예정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④ 퇴거 시 입주자는 입주실을 입주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후 진흥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진흥원의 확인 절차 없이는 임대보증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미납된 입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정산 후 환급 처리한다.

제17조(졸업)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서식에 의한 서면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해야하며 퇴거예정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1. 입주 계약기간의 만료
2. 당초 계획한 창작 및 사업을 입주 기간 내에 완료하여 자립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입주 장소 지정) ① 선정된 입주자는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 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단, 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 호실 이외 공간에 입주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입주공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의 승인 후 변경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출입 관리) ① 입주시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주자에 대하여 출입을 관리한다.

1. 입주자의 입주시설 이용 시간은 제5조 1항을 따름
2. 입주시설 내 잠금장치를 입주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보조 잠금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열쇠의 복사본(디지털 잠금장치일 경우 비밀번호)을 접수하여 진흥원에서 지정한 시설 관리자가 관리함
3. 입주가 허가된 자 외에 타인에게 입주시설의 열쇠 및 비밀번호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4. 입주자의 과실로 분실 및 파손, 절도 등의 사고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보수 및 배상책임을 요구하여야 함

② 입주시설 보전상태의 검사, 위생, 방화, 방범 구호 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진흥원은 입주시설 내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제20조(시설이용 준수사항) 진흥원은 입주시설의 보호와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주자의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은 시정, 경고,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입주시설 이용 시간은 제5조 1항을 따름
2. 입주자는 캠퍼스의 시설사용에 있어 공공재산을 사용함을 명심하여 시설 및 물품의 사용에 있어 낭비와 훼손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3. 입주자가 입주시설 및 공용장비 또는 공간 사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 및 분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어야 함
4. 캠퍼스 시설 이용 시 상호 배려와 양보로 입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함
5. 입주자는 입주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함
6. 입주자는 개인 소지품(특히 귀중품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분실 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함

제21조(행위의 제한) 입주자는 입주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주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은 시정, 경고,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탕비실) 이외의 곳에서 취식 및 취사를 하는 행위
2. 입주 시설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기숙하는 행위
3. 음주가무, 흡연, 고성방가, 소음 등 민원을 초래하는 행위
4. 반려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5. 제공된 컴퓨터 내에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
6. 지원 물품과 설비의 임의 변경 및 실외 반출 행위
7. 진흥원의 승인 없이 캠퍼스 시설물에 부착물 및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8. 인화물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품, 화기류 등의 반입
9.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반입
10. 기타 시설의 공동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제22조(손해배상) ① 입주자는 준수사항의 위반 또는 고의 및 과실로 캠퍼스 시설 및 장비 등을 손상시키거나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해당 입주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입주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진흥원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23조(변경신고의 의무)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된 서식에 변경 신청 내용 및 승인 요청 사항과 함께 진흥원이 요구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월 15일 이상 필수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2. 사업자 등록 및 신규 등록 사항
 3. 입주 기업 대표자 변경 및 동반 입주자의 퇴거 및 신규 입주
 4. 기타 진흥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입주자에 대하여 진흥원은 경고 조치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③ 변경 신고 이행 후 입주자의 변경 사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은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시설 조작·변경·신설 등) ① 입주자는 입주시설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진흥원이 지휘 및 감독 등을 행할 수 있다.

1. 캠퍼스 건물 내의 조작, 칸막이, 창호 등의 신설 또는 모양 변경 행위
 2. 기설 공급 외의 전등 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화 기타 통신시설 가설, 급·배수 등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변경 행위
 3. 캠퍼스 건물의 외부(출입문, 외벽, 유리셔터 등 포함)에 상호, 상표, 기타 표지 부착행위
 4. 금고의 고착, 기타 주요 중량물의 반입 및 고착 등의 행위
 5. 간판 및 광고물의 시설 및 부착행위
- ② 시설의 조작,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 ③ 진흥원은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임의 설치 및 구조변경 등을 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및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 있다.

제3장 입주 실태 관리

제25조(실태조사 등) ① 진흥원은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적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실태 및 실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진흥원이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20조, 제21조 대한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대한 내부 시설물 현황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이 요구한 기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 진흥원은 시정 요구 또는 경고 및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 활동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입주자에 대하여 진흥원은 경고 및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후 진흥원 및 캠퍼스 사업 참여 시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시설 및 장비 운영

제26조(시설 및 장비) 이 지침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 시설 : 입주 작가실(개인, 공동), 입주 기업실, 회의실 등
2. 편의 시설 : 전시홀, 휴게 공간, 탕비실, 화장실 등
3. 지원 장비 : 신티크 등 웹툰·만화 제작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사무집기류 등

제27조(사용범위)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원 자체 사업과 업무상 필요 시 사용하고자 할 때
2. 입주자가 필요 시 사용하고자 할 때
3. 진흥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외부의 관련 업체, 단체 및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
4. 기타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시설 및 장비의 사용 신청 및 승인) ① 진흥원은 캠퍼스의 자체 행사, 교육 및 시설의 관리·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장비를 신청자에게 대관 및 대여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시설 및 장비의 사용 시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진흥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사용 완료 후 신청자는 사용 시설 및 장비를 사용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후 진흥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사용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

④ 시설 또는 설비, 장비의 파손과 훼손 등 대관 및 대여 중 발생한 손해는 대표 신청인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 변상 조치해야 한다.

제29조(청소 및 위생) ① 진흥원은 캠퍼스의 청결 및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편의 시설에 대한 정기적 청소를 진행한다. 이를 제외한 입주 시설 및 입주자 개별 소유물에 대한 청소는 입주자가 실시한다.

② 입주자는 실내 및 복도와 편의 시설의 청결 및 공중위생을 지켜야 하며,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의 반입 및 반출)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캠퍼스 내에 반입할 수 없다.

1. 인화물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 시설을 갖추고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반입 가능
 2. 악취 및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3. 창작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물품 외의 사치성 가구 집기
 4. 혐오성 물품
 5.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물품
 6. 과도한 전력 소비를 요하는 장비 (1kW이상)
 7.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전열 기구. 단, 전열 기구 사용 시 진흥원에 사전 사용 등록 후 사용 가능하며 정부의 품질인증이 완료된 제품만 사용 가능함
- ② 공작기계 등 중량물이나 대형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규격, 중량 등을 사전에 신고하고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진흥원은 캠퍼스 내 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방재관리) 입주자는 시설 방재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캠퍼스 내에서는 어떠한 소각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입주자는 방재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
3. 입주자는 방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32조(주차) 입주자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나 차량의 도난, 훼손 등 사고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입주자가 진다.

제33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입주자는 시설 및 장비를 반환할 경우 진흥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진흥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파손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진흥원이 원상 복구할 경우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 승인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은 입주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입주실 퇴거예정자는 진흥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캠퍼스 시설 내의 개인물품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은 해당 물품을 처분할 수 있으며 입주실 퇴거 예정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물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을 입주실 퇴거 예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사용장소) 진흥원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캠퍼스 시설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기타) ① 진흥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② 진흥원은 이용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입주자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③ 입주자는 어떠한 목적이라도 진흥원의 사전 승낙 없이 진흥원의 이름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입주자가 이와 같은 활동을 했을 시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④ 입주자는 진흥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경상북도 및 진흥원에서 제공되는 내용에 대한 이용 권한, 기타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부칙<2023.05.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 이 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써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북문화재단의 규정 및 규칙에 근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